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 20. (생 략)	13.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

	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 ---------- ---------- --------제25조제6항------- ---------- ---------- ----------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시공) ① ~ ③ (생략)	제24조(건축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 ----------제25조제5항----------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

	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

	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② ~ ⑨ (생 략)	③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⑪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⑫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6개월
	2. 2년 이내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날부터 1년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제외한다)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2.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3.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

	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1년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이하 2.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 이하 ⑥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⑪ 건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②(생 략) <신 설>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②(현행과 같음)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

	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 설>	제48조의3(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생 략)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② ----------

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삭 제>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 ⑤ (생 략)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

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⑦ ---------- ----------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 ---------- ---------- ---------- ---------- ---------- ---------- ----------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 ---------- ----------.
1.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1. ----------제56조, 제58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생략)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	②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 ---------- ---------- ----------

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 ---------- ---------- ---------- ---------- -----.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생 략)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 ----------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 ---------- ---------- ---------- --. ---------- ---------- ---------- ---------- ----------.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생 략)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4. ---------시·도지사 및 ---------- ---------- ---------- ----------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 ④ (생 략)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21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 설>	⑦ 제5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 ---------- ---------- ---------- ---------- ----------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

	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시공·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제106조(벌칙) ① -----,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 ---------- ----------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 -------.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 ---------- ---------- ----- 5억원---------- ---. ② ---------- ---------- ----------10억원----------.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	제108조(벌칙) ① ---------- ---------- ---------- ---------- ---------- ----------

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억원---------- -------.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 ---------- ---------- 2억원-----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 ---------- 1억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 ---------- ---------- 제25조제7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5. 제25조제3항---------- ---------- ---------- ---------- ---------- ---
6.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	6. 제25조제6항---------- ----------

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신 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생 략)	9.(현행과 같음)
9의2.(생 략)	9의2.(현행과 같음)
<신 설>	9의3. 제48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 전문기술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제111조(벌칙) ----------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1. ---------- ----------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허위로 기재한 자
	3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1. 제25조제4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